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의 장

제15호 2019. 4. 26(금)

공고

- 남원시 공고 제2019-822호 도로지정공고 ----- 1
- 남원시 공고 제2019-835호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 2
- 남원시 공고 제2019-842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----- 14

회 람		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● 남원시 공고 제 2019 - 822호

도로지정공고

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23일

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㎡)	이해관계인		
							지 번	편입면적 (㎡)	토지소유자
2019-	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107-7	김귀*	2019-건축과- 신축허가-26	85	4.5	386.3	109-3	60	김귀*
							138-38	57	정남*

남원시 공고 제2019 - 835호

『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25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 침입이 예상되는 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하여 방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의를 개정 (안 제2조)

- 침입범죄,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, 방범시설의 정의 규정을 신설

나.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중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 (안 제8조)

다. 방범시설 설치기준 신설 (안 제8조의2)

다. 그 밖에 일부문구를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의견

서를 남원시장(참조 : 건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건축과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(063-620-6552), FAX(063-620-6719) 및
직접방문 등

4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(☎063-620-65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9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19. 4. 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건 축 과 장

1. 개정이유

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 침입이 예상되는 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하여 방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를 개정 (안 제2조)
 - 침입범죄,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, 방범시설의 정의 규정을 신설
- 나.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중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 (안 제8조)
- 다. 방범시설 설치기준 신설 (안 제8조의2)
- 다. 그 밖에 일부문구를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 : 2019. 4. . ~ 2019. 5. .(20일간)
 - 결 과 :
 - 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 - 3) 성별영향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범죄예방 도시디자인”이란 남원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,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·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침입범죄”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.
3. “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”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, 인근 피해 사례,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서류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.
4. “방범시설”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, 방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살, 창호용 잠금장치,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 제1호 중 “보완한다.”를 “보완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“한다.”를 각각 “할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배치한다.”를 “배치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조성 한다.”를 “조성할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

제5조 중 “도시디자인 추진”을 “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기준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4호 중 “범죄예방을 위한”을 “범죄예방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2항 중 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”를 “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”로 한

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 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방법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

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방법시설 설치 기준 등) 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따른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1항에 따른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방법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법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.

제9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방법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

제9조 제2항 전단 중 ““남원시 경관위원회””를 “남원시 경관위원회”로 한다.

제12조 제2항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범죄예방 도시디자인”이란 <u>남원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,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·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범죄예방 도시디자인”이란 <u>남원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,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·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</u> 2. “침입범죄”란 <u>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.</u> 3. “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”란 <u>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, 인근 피해사례,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서류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.</u> 4. “방범시설”이란 <u>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, 방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살, 창호용 잠금장치,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.</u>

제3조(기본방향)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,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.
2.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, 울타리,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.
3.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.
4. 시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, 공원, 휴게시설,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.
5.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·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한다.

<신 설>

제5조(시장의 책무)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범죄예

제3조(기본방향)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보완할 것
2. -----

----- 할 것
3. -----

----- 할 것
4. -----

----- 배치할 것
5. -----

----- 조성할 것
6.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

제5조(시장의 책무) -----

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
- 5. (생략)

제7조(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사업)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

--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기준 등-----

-----.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--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범죄예방 -----

- 5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---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-----
-----.

제8조(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사업) ① -----

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방법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②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.

제8조의2(방법시설 설치 기준 등)

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따른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1항에 따른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방법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법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 및 제

제9조(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)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남원시 경관 조례」에 따른 “남원시 경관위원회”가 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2조(교육 및 홍보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25조에 따른다.

제9조(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) ①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방범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② -----

남원시 경관위원회-----

제12조(교육 및 홍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인터넷 홈페이지 -----

남원시 공고 제2019-842호

무연고 사망자 공고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(유골)를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4월 25일

남 원 시 장

1.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

성명	성별	생년월일	발견일시	본 적	발견장소	사망원인	비고
				주 소	안치장소		
박귀용 (추정)	신 원 불 상	2019.2.8 17시 25분경	신 원 불 상		시청동로 36-12	미상	화장후 납골
					전북 남원시 솔터길 40-36 승화원		

2. 공고 기간 : 2019. 4. 25 ~ 2019. 5. 23

3. 사체의 특성 및 발생 상황

사망자는 2019. 2. 8. 17시 25분경 남원시 시청동로 36-12 건물에서 발견되어 신원불상으로 행정처리 의뢰됨.

4. 처리방법 : 화장 후 납골

5. 납골기간 : 10년

6. 납골장소 : 전북 남원시 솔터길 40-36 승화원

7. 연 락 처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(☎ 063-620-6833)